

환경교육진흥법 제정과 국가 환경교육종합발전 방안의 의미

최 석 진

이화여자대학교

The Significance of Environmental Education Promotion Act and Main Contents of National Level Environmental Education Master Plan

Sukjin Choi

Ewha Women's University

ABSTRACT

The study first reviewed the significance, enactment process, and future challenges for growth of the Environmental Education Promotion Act first proclaimed in Korea in March, 2008. Then it sorted out the drafts about the plans for the overall growth of environmental education, which were researched and developed in the national level Environmental Education Master Plan based on the act, their major tasks in each field, and research plans to be promoted. Its findings will provide reference to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 act and the plans for the overall growth of environmental education.

Key words: Environmental Education Promotion Act, National level, Environmental Education Master Plan

I. 환경교육진흥법 제정의 필요성

우리나라 환경교육은 1970년대 이후 비교적 빠르게 성장해 왔다. 그러나 이제 한 단계 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국가 수준의 법적 및 제도적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미흡한 상황이다. 현재(2008년 2월) 환경보전 관련 법은 환경부 소관이 약 50개이고, 다른 부처에서 관장하는 관련법 등도 많은데 비해, 환경교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법은 없었다.

환경교육에서 새로운 국가적 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영향의 대표적 사례는, 1992년 제 6차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세계 처음으로 ‘환

경’ 과목이 개설된 결과, 중등학교 환경교육은 물론 대학교육과 교원 양성교육 등에까지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외국의 경우 미국과 일본에서 환경교육 관련 법을 제정한 후에 예산 증액 조치 등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최석진 외, 2003).

2009년부터 시행될 환경교육진흥법은 환경문제 발생에 대한 처벌이나 행위를 금지하게 하는 규제법이 아니라, 환경교육의 진흥과 지원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이 법이 효율적으로 운용된다면 앞으로 환경교육과 지속가능 발전 교육 및 녹색 성장 교육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II. 환경교육진흥법 제정의 경과¹⁾

이법 제정 추진 경과를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1. 제1차 법률안 발의 및 폐기(2000.12~2004. 5)

- 2000년 12월 13일 : 공주대학교에서의 환경교육 심포지엄에서 국회환경포럼의 조길영 정책실장과 한국환경교육학회(당시 회장 최석진)가 환경교육진흥법 제정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함.
- 2001년 2월: 한국환경교육학회에서 한국민간환경단체진흥회의 지원으로 ‘환경교육진흥법(가칭) 제정을 위한 연구’ 추진2).
 - 환경교육진흥법과 같이 여러 부처에 이해 관계가 걸친 법령 제정은 관련 부처간의 이견 조정이 어려워서 의원 입법이 유리하여 민간단체인 학회와 국회의원이 연계하여 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추진하였다.
- 2001년 9월~10월: 위의 연구진과 국회환경포럼 주관으로 환경부와 교육인적자원부의 담당관 및 전문가 등과 수차례 협의회를 갖고 동 법의 시안 검토.
- 2001년 10월: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국회환경포럼과 한국환경교육학회 공동으로 ‘환경교육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 2002년 5월: 국회 귀빈 식당에서 ‘환경교육진흥법 발의를 위한 토론회’ 개최. 이 자리에서 동 연구진이 만들고 한국환경교육학회 이름으로 제안한 ‘환경교육진흥법 제정 건의문(안)’ 채택.
- 2002년 6월~ 9월: 동 법 시안에 대하여 환경부의 공식적인 검토 요청: 환경부에서 동법 시안을 공식적으로 검토하여 수정안을 국회환경포럼에 제출.

- 2002년 11월~12월: 한국환경교육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에서 의견 수렴. 환경부의 검토 의견을 받아 12월 최종안을 확정하여 의원 서명을 받기 시작.
- 2002년 12월 31일: 국회 이정일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환경교육진흥법안 발의.
- 2003년 11월~12월 : 한국환경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에서 의견 수렴 후 최종안을 확정하고, 2003년 12월 국회의원의 서명을 받아 국회환경포럼 회장인 이정일 의원의 대표 발의로 <환경교육진흥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발의.
- 2003. 1월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한국환경교육학회(회장 최석진) 주관으로 예산처, 교육부, 환경부 담당관 등과 연구진이 동 시안의 쟁점 사항에 대하여 의견 조율했으나 이견 차가 컸음.
- 2003. 5월 : 그린 웨밀리(박정희총재) 주최 환경교육진흥법 제정 세미나 개최.
- 2003. 6월~ 12월 : 환경부 내의 의견과 일부 민간단체에서 예산 조처 등이 명시되지 않는 법 제정의 실효성에 의문 제기. (참고: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환경교육진흥법 제정 추진 노력을 보고 자체적으로 추진한 ‘환경교육추진및 지원법’을 제정)
- 2004. 5월 : 다음과 같은 이유로 폐기됨. 주요 이유는 부처간의 이견과 그의 조정 노력 미흡, 일본처럼 선언적인 내용으로라도 제정한 후에 추후 보완하자는 연구진의 제안이 수용 안됨, 국회 발의 제안 이후에 법 제정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노력 및 관련 담당 주무 측의 관심 미흡. 16대 국회의 임기 종료 등.

2. 법안 재발의 및 법률 공포와 하위 법령 제정 (2006. 1~2008. 12)

1) 이 II장과 III. V장은 최석진, 2009, 환경교육진흥법의 취지와 발전 방향, 환경정보 34월호, 환경보전협회에서 발췌함.
 2) 2001년 당시, 동 법 제정 연구진은 최석진(한국환경교육학회장), 신호상(공주대 교수), 이재영(공주대 교수), 이선경(청주교대 교수), 조길영(국회환경포럼 정책실장)으로, 이 연구진은 2001년 초부터 2003년까지 활동함.

- 2006년 1월~12월: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KEEN, 환경교육법 제정 추진팀, 담당 최석진)와 한국환경교육학회, 그린첼밀리 등에서 환경교육법 제정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일부 제기되었으나 실질적인 활동이 없었음. 한편, 국제환경교육연구소(소장 최석진)가 한국민간환경단체진흥회의 소액 지원을 받아 환경교육진흥법 제정을 위한 새 연구진을 구성하고 다시 입법화를 추진³⁾하면서 수차례의 공개 토론회, 간담회, 국회 담당자 상대의 협의회 등 다양한 모임을 개최하고 내용을 보완함. 한편, 환경부 담당과에서도 최초로 환경교육진흥법 제정 관련 공개토론회를 수차에 걸쳐서 개최함(최석진 등이 주제발표 담당) 이 기간 중에 연구진이 작성한 안을 바탕으로 한국환경교육학회와 국회 제종길 위원측에 관련 세미나 개최를 제안하였으나 무산됨.
- 2007년 3월 26일: 위의 연구책임자가 그동안 개발한 법률안을 바탕으로 시안을 확정하고, 이를 국회 이경재 의원이 대표하여 <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함.
- 2007년 6월 12일: 위의 연구진 안을 바탕으로 별도로 제종길 국회의원의 대표 발의로 <환경교육의 진흥과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함.
- 2007년 11월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위의 2개 법안의 중재안을 통과시킴(이 과정에서 해양환경교육 등이 추가되는 등 시안과 일부 내용이 변경됨).
- 2008년 2월 19일: 마침내 <환경교육진흥법>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함.
- 2008년 3월 21일: <환경교육진흥법>(법률 제8949호)이 공포됨.
- 2008년 3월~4월 : 동 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간담회및 사회환경교육지도사 관련 토론회 개최 (국제환경교육연구소,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공동 주최).
- 2008년 10월 29일: 동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097호) 공포.
- 2008년 12월 3일: 동 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309호, 국토해양부령 제70호) 제정.
- 2009년 3월 부터 12월 : 환경부가 동 법 시행에 따른 다음 과제를 외부 전문가에게 용역 의뢰하여 시안 개발 중
 - 환경교육종합발전계획 (최석진 외, 한국환경교육학회)
 -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제도 연구 및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 제도 (김인호 외, 한국환경교육연구소)
- 2009년 3월부터 :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교육진흥법 관련 조례 제정 및 환경교육종합발전계획 수립 추진 중(2010년 3월 현재)
 - 서울시 (조례와 종합발전계획 작성 완료), 제주도 (조례 제정 완료), 경상남도 (조례 제정 추진 중)

Ⅲ. 환경교육진흥법의 제정 의의

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실질적인 법률은 현재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것이 유일하다.⁴⁾ 동 법 제정의 의의는 간단히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지금까지는 환경교육 실시에 대해 법적 기반이 없던 것을 그 근거를 제시하고, 중앙

3) 이 과제의 추진팀은 다음과 같다. 2006년도는 최석진(국제환경연구소 소장), 김이성(서울대 박사과정), 신호상(공주대 교수), 이선경(청주교대 교수), 이재영(공주대 교수), 조길영(국회환경포럼 정책실장)등이었다. 2007년에는 전년도 일부 참가자의 사의로, 최석진, 조길영과 박균성(경희대 법대교수), 이동엽(경북대 연구원), 이진중(한국환경교육협회장)이, 2008년에는 최석진· 이동엽, 조길영과 김인호(신구대 교수)· 전재경(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활동했다.

별도로,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의 환경교육진흥법 제정과 하위 법령 제정 당시에 환경부 환경협력과의 심무경 과장, 윤명현 과장 및 오영준 사무관의 수고가 매우 컸다.

4) 미국의 환경교육법(Environmental Education Act)은 1980년과 1990년에 10년 한시법으로 제정되어서 지금은 효력이 정지되었고, 일본 것은 우리나라의 것에 비하여 실질적인 내용이 적고 선언적이어서 현재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의 환경교육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와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였다.

둘째, 소정의 자격을 갖춘 사회환경교육지도사와 검증된 환경교육인증 프로그램 활용 및 일정한 기준을 갖추고 지역별로 지정된 환경교육센터 등을 통해 질적으로 향상된 환경교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대학(원)에서 환경 관련 전문 교육을 받은 우수한 환경전문인력의 제도적 활용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였다.

셋째, 사회환경교육과 학교환경 교육의 추진 및 민간 차원의 환경교육 강화 및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넷째, 이들을 통하여,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질적 향상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나아가, 국가의 저탄소 녹색 성장 정책 추진 및 지구적인 기후변화 등 지구 환경문제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활동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IV. 환경교육 종합발전 방안의 내용

1. 환경교육종합발전방안 수립의 의의와 경과

가. 의의 및 필요성

환경교육진흥법 제 5조에 근거하여 5년 마다 환경부는 국가 수준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이 법에 따라 시·도 광역 지자체장은 별도의 지역별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다.

나. 경과

환경부에서는 부처 자체 사업으로 1990년대 이후 수차례 국가 수준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연구 개발해 왔으며, 근래에는 환경부 지침으로서 2006년에 환경교육발전 10개년 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다.⁵⁾

환경부에서는 2009년 초에 환경교육진흥법에 의거하여 새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를 추진하여, 이를 바탕으로 2010년 상반기에 정부 방침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2. 국가 환경교육종합발전계획(2010~2014) 연구 내용⁶⁾

2009년 3월부터 동년 11월까지 연구진⁷⁾과 약 40명의 외부 전문가의 자문 및 설문조사(약 120명 참가)를 통하여 정리한 연구진의 방안은 다음과 같다.

가. 기본 방향

동 연구의 비전, 목표는 다음과 같다.

- 비전 : 학습과 실천을 통한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구현
- 목표 : 다양한 환경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
친환경 교육을 통한 녹색시민 양성

나. 분야별 정책 과제와 추진 계획

추진 영역은 3개 영역으로 하고, 주요 과제와 실행 방안은 표 1과 같다.

1) 환경교육 활성화 기반 구축

종합적인 기반 구축 분야는 표 1과 같다.

5) - 최석진 외, 1997, 환경교육·홍보 종합 계획 수립 연구, 환경부·한국교육개발원.

- 최돈형 외, 2001, 제 2차 중장기 환경교육 강화 방안 연구, 환경부·한국환경교육학회.

- 최석진 외, 2002, 국가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교육 추진 전략 개발 연구, 환경부·한국환경교육학회.

- 최석진 외, 2005, 환경교육 발전 10개년 계획 연구, 환경부·한국환경교육학회 :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환경부에서는 다음 계획을 확정 발표함.

- 환경부, 2006, 환경교육 발전 계획 (2006~2015).

6) 이하 IV장의 내용은 최석진 외, 2009, 11,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환경교육 종합계획 수립 연구', 환경부·한국환경교육학회의 최종보고서에서 발췌하였으며, 최종 내용은 정부안에서 변경 및 확정될 것이다.

7) 동 연구진은 최석진, 김운태, 남상덕, 박종성, 이진권, 장미정으로 각주 6 번의 과제를 수행하였다.

표 1. 환경교육 활성화 기반 구축 분야의 추진 내용

추진 과제	추진 계획
1. 환경교육 진흥법 운영의 효율화	1) 환경교육진흥법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의 효율화 2) 사회환경교육 지도사 운영 활성화 3)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 인증 4) 환경교육센터 확대 운영 5) 환경교육정책협의회의 효율적 구성과 운영 6) 국토해양부의 해양환경교육 종합계획과 연계
2. 시민의 환경관련 녹색성장 마인드 증대 및 관련 인력 확충	1) 녹색 교육 기회와 홍보 확대 2) 관련 인력의 연수 체험·양성 기회 확대 3) 환경교육 연보 발행
3. 환경교육 기금 조성	1) 정부 예산 중 일부를 환경교육 기금 조성 2)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교육 관련 지원 예산의 확대 3) 한국환경민간단체진흥회의 예산 확대
4.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교재 보급 확대	1)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확대 : 대상별, 지역별, 기관별 등 2) 각종 개발 프로그램 및 교재의 탑재 전용 사이트 운영, DB 구축 3) 우수 프로그램과 교재의 인센티브 제공·보급 확대 4) 기관별 프로그램 개발 중장기 마스터 플랜 개발 5) 공공기관 개발 교재의 공모 강화 및 사후평가 의무화와 우수 교재의 공급 확대 6) 개발된 교재의 체계적 보급 시스템 효율화 7) 대학(원), 교사, 민간단체활동가, 일반인 등의 논문, 수기 등의 공모 사업 확대
5. 국가 수준 환경교육 지침 (standard) 개발	1) 유치원부터 청소년까지를 포함하는 환경교육의 목표와 내용 체계 개발 2) 대상별 교육과정및 교재 개발과 해당 기관의 지도에 활용 권장
6. 일반 사회 교육·문화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	1) 각종 사회·문화 단체의 환경 관련 강좌 확대 추진 2)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 3) 각 단체 및 프로그램 운영측과 환경 관련 시설과의 연계 추진 4) 환경능력검정시험 제도 도입 검토
7. 환경교육 협력 체계 강화	1) 정부 유관 기관 등 지자체 등과의 협력 체계 강화 2)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녹색성장 교육 등과의 연계 강화 추진 3) 연계 활동 관련 협의체 구성, 우수 사례와 정보 자료집 개발 4) 학교 및 민간단체간의 공동 연수, 워크숍 확대 5) 관련 활동의 환경부 환경교육정보(KEEP) 사이트 탑재 권유 6) 학교-사회 환경교육 연계 강화
8. 국제적 환경교육 파트너 십 및 네트워크 확대	1) 국제 환경교육 활동 확대(TEEN 사업 등) 2) 국제 네트워크 활동 관련 사례와 정보 자료집 개발 3) 주요 국제 활동 정보의 공유화와 관련 활동의 안내 강화 4)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녹색성장 교육 등과의 연계 강화 추진
9.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 및 협력 증대	1) 특별·광역시장·도의 “지역 환경교육 계획” 수립 및 예산·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촉구 2) 사회환경교육의 진흥 노력 3) 사회환경교육지도사의 활용과 그를 위한 경비 지원 4)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의 활용 5)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 운영

2) 학교환경교육의 내실화

학교환경교육 분야는 표 2와 같으며, 교육과 학기술부의 ‘녹색성장 교육 강화 방안’ 해당은 과제에 반영하도록 한다.

3)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사회 환경교육 분야는 표 3과 같다.

V. 환경교육진흥법과 환경교육종합발전 계획의 과제와 발전 방향

1. 환경교육진흥법의 발전 방향

동 법의 주요 과제와 발전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교육 지원과 진흥의 기본 정신 반영을 반영하여 이 법을 통하여 앞으로 보다 환

표 2. 학교환경교육 분야의 추진 계획

추진 과제	추진 계획
1. 교육과정 내 환경교육 강화	1) '07년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에의 환경교육 내용 강화
	2) 개정 연구 중인 미래형 교육과정에 환경교육 강화
	3) 재량활동 시간의 환경교육 강화 및 교육과 자료 개발 확대
	4)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감 등 고위 간부 회의자료에 환경교육 강화 지침 포함
	5) 시·도 교육청 및 학교 평가 항목에 환경교육 관련 내용 포함 추진
	6) 시·도 교육청 환경교육 담당관 협의체 운영의 효율화
2. 환경체험 교육 강화	1) 환경부와 지자체 및 시·도 교육청의 환경체험학습 지원 프로그램 확대
	2) 학교와 지역 사회 연계 환경체험학습 운영 연수 및 활동 강화
	3) 지역별 환경체험학습장 자료 보급 확대 및 DB 구축
	4) 학교별 환경동아리 지원 강화
	5) 환경 관련 행사 지원 확대 및 대통령 환경 장학생 제도 설치
3. 환경교육 시범 학교 운영의 효율화	1) 다양한 학교 환경교육 관련 사업의 성과 평가 및 사후관리 강화
	2) 타 환경 관련 유사 시범학교 지정 운영 기관과의 연계 강화
	3) 학교 시설에 대한 환경교육적 활용 방안 확대
4. 유아 환경 교육 강화	1) 유아의 실생활 관련 환경교육 교재 및 자료의 개발·보급 확대
	2) 유아 교사·학부모·유아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 보급
5. 대학 환경 교육 강화	1) 환경 관련 교양 강좌 개설 확대
	2) 그린 캠퍼스 및 환경교육 특성화 대학 지정 운영
	3) 대학생 공모사업 및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강화
6. 교원 양성 대학의 환경 교육 강화	1) 교사 양성 대학(교대, 사대)의 교양 과정에 환경교육 관련 강좌의 개설 강화 및 지원
	2) 환경교육학과 및 환경교육 교직과정의 환경교육 관련 전공 강좌의 효율화
	3) 교원 양성 대학의 봉사활동 시간에 환경교육 포함 추진
7. 유·초·중등 교원 환경 교육 연수 강화	1) 각급 학교 교원 연수 기회 확대
	2) 교원 신규임용·자격연수 시 환경관련 강좌 포함 추진
8. 환경 과목 선택 및 환경 교육 전공 교사 확대	1) 중·고등학교의 환경과목 선택학교 확대
	2) 미자격 상치 교사의 환경교육 전공교사로의 대체 추진
	3) 환경교육전공 교사의 신규 임용 확대
	4) 1개교 1환경교사 임명 추진

표 3.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분야의 추진 계획

추진 과제	추진 계획
1. 사회 환경 교육의 기반 연구를 통한 역량 강화	1) 사회환경교육 연구기관(대학, 국책, 민간) 전담 부서 설치 및 설립
	2) 사회환경교육 체계화를 위한 기반 연구 지원 및 중장기 비전 연구
	3) 현장 전문가-연구자의 공동 연구 지원 및 활성화
	4) 사회환경교육 인력 및 프로그램 DB 구축 및 지속적인 업데이트
	5) 각종 지원 사업의 평가 및 지원 추진 방향 보완
2. 사회환경교육의 전문 인력 및 지도자 양성	1)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확대 및 지원
	2) 지역별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발굴, 리더십 교육 및 선진 연구
	3) 환경교육진흥법상의 사회환경교육지도사 프로그램 담당자 연수
3. 지역 기반 및 민간 단체 환경 교육 강화	1) 지역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별 환경교육네트워크 활동 지원
	2) 풀뿌리 민간단체의 소모임 교육 활동 지원
	3) 통합 주제의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 공모 및 지원
	4) 각 단체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연간 자체평가보고서 공모 및 지원
4. 주체별(공무원, 기업 등) 환경 교육 지원 및 활성화	1) 기업, 기관, 단체 최고경영자의 환경 리더십 교육
	2) 공무원 및 기업인 대상 환경소양·실천적 환경교육 지침 개발 및 보급
	3) 공무원 임용·승급 연수 시 환경교육 강좌 의무화
	4) 기업의 사회 공헌사업으로서의 환경교육 활성화 사업
5. 대상별(청소년, 군인, 소외계층, 언론, 종교인 등) 환경교육 지원 강화	1) 국가 수준의 청소년 육성방안에 환경교육 강좌 정책 반영
	2) 청소년지도자 양성 과정에 환경교육 강좌 운영
	3) 군 환경교육 활성화
	4) 예비군, 민방위 대원 환경교육 강화
	5) 공부방, 아동센터 등과 연계, 소외계층의 환경교육 지원
	6) 노인, 은퇴(예정)자를 위한 환경교육 지원
	7) 종교인, 언론인 등의 환경교육 활동 기회 확대
6. 도·농 교류 사업 확대	1) 도농교류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체험지도사 및 마을 해설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 협력
	2) <환경교육진흥법>과 <도농교류촉진법>의 연계 운영 및 지원

경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다. 이 법에 제시된 항목이나 제도 등이 새로운 규제나 방침으로 기존의 교육 방법이나 제도 등을 허물고 새로 시작한다는 것이 아닌 한 걸음 더 발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즉, 기존의 환경교육 발전을 위한 단체와 노력을 인정하고 이들로부터 한 단계 발전시키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 또한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이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의 연계와 균형적인 발전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이 법

의 주요 내용을 보면 사회환경교육 분야의 제도적인 바탕 마련이 보다 더 강화되고 학교환경교육은 미흡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연구진은 처음에는 학교환경교육도 제도적으로 상당히 강화시키려고 노력했으나, 관계 부처의 반대 등 현실적인 벽에 막혀서 실현되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계획하고 결과 보고를 하는 ‘환경교육종합발전 계획’ 등에 학교 환경교육 부문을 보다 구체화 및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미 일부 지방 정부에서 만든 이 법의 조례에 그러한 노력이 반영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셋째, 예산 조처 문제이다. 이 법 제정 초기부터 실질적인 예산 지원책을 반영하려고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였으나, 예산 담당 부처는 물론이고 주무 부처도 별도의 예산 항목 마련에 반대하여서 실현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법에는 처음으로 당국이 학교나 단체가 환경교육을 실시할 경우, 예산이나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나아가 예산 확보를 명시하고 있다. 예산 지원 당국자는 의무 조항이 없다고 회피할 것이 아니라 이를 토대로 관련 부처와 지자체를 비롯하여 부서 등은 보다 관심과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넷째, 제도적인 조처이다. 대표적인 것이 동법의 시행령 등을 토대로 마련할 중앙 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 등에 이 법의 취지를 살려서 실효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며, 특히 이 법 상의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작성과 운영 및 보고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섯째, 이 법 상의 새로운 제도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노력이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즉,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제도와 양성 기관 운영,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운영 등에 관한 심도 깊은 연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2. 국가 환경교육종합발전 방안의 발전 방향

환경교육종합발전 방안의 주요 과제와 발전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부 등 정부 부처와 관련 기관 및 단체가 환경교육종합발전 방안의 효율적인 계획 수립과 더불어 실효성있게 추진하는 것이다.

둘째, 각 시·도 지자체가 지역별로 종합발전방안을 조속히 효율적인 수립과 더불어 적극적인 실천을 행동화하는 것이다.

셋째, 앞으로 동 환경교육종합발전계획을 5년 동안 실행한 후에 충실히 추진 결과를 제대로 보고하고 평가하는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고

그 결과를 차후의 정책에 반영토록하는 것이다.

끝으로 이 법과 국가 환경교육종합발전 방안이 오랜 진통과 노력 끝에 탄생되었는데, 운영상의 어려움은 시행 중에 서로 협력하고 보완하여 이 법과 계획의 당초 목표를 달성하도록 모두의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1. 녹색성장위원회 (2009).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2. 녹색성장위원회 (2009). 녹색성장 국가전략.
3. 최돈형, 남상준, 이재영, 손연아 (2001). 제 2차 중장기 환경교육 강화 방안 연구, 환경부·한국환경교육학회.
4. 최석진, 김영민, 김재범, 이시재 (1997). 환경교육·홍보 종합계획 수립 연구, 환경부·한국교육개발원.
5. 최석진, 김종욱, 신동희, 이재영 (2002). 국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교육 추진 전략 개발 연구, 환경부·한국환경교육학회.
6. 최석진, 신호상, 이선경, 이재영, 조길영 (2002). 환경교육진흥법 시안 개발 연구, 한국환경교육학회.
7. 최석진, 신호상, 이선경, 이재영, 조길영 (2003). 환경교육진흥법 제정 추진 및 환경교육사 제도 연구, 한국환경교육학회·한국민간환경단체진흥회.
8. 최석진 (2005). 다시 환경교육진흥법 제정을 강조하며, '환경교육진흥법 제정 세미나' 발표 자료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9. 최석진, 정완호, 김이성, 김인호, 남상덕, 이동엽, 한승호 (2005). 환경교육 발전 10개년 계획 연구, 환경부·한국환경교육학회.
10. 최석진, 김이성, 신호상, 이선경, 이재영, 조길영 (2007). 환경교육진흥법 법제화 방안 연구, 한국환경교육학회.
11. 최석진 (2007). 환경교육진흥법의 시안과 쟁점, 한국환경교육학회 전반기 발표 논문집, 한국환경교육학회.

12. 최석진, 박균성, 이동엽, 이진중, 조길영(2008). 환경교육진흥법 입법화의 재추진 및 쟁점 연구, 국제환경교육연구소.
13. 최석진, 정은영, 이대균, 이동엽 (2008). 국가 환경교육 표준 지침 연구, 환경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14. 최석진, 김인호, 이동엽, 전재경, 조길영 (2009).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제도 및 환경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연구, 국제환경교육연구소.
15. 최석진 (2009). 환경교육진흥법의 취지와 발전 방향, 환경정보, 3-4월호, 환경보전협회.
16. 최석진 (2009). 환경교육진흥법 제정의 의의와 환경교육종합발전 방안 연구 방향, 환경교육 한마당 세미나 자료집,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17. 최석진, 김윤태, 남상덕, 박종성, 이진권, 장미정 (2009).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교육 발전종합계획 연구, 환경부·한국환경교육학회.
18. 최석진, 김이성, 김현정, 이재혁, 최미영 (2009).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외국의 환경교육 분석 비교 연구, 환경부·한국환경교육협회.
19. 최석진, 김인호, 금지현, 조길영(2010), 환경교육진흥법의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및 환경교육센터 운영 방안 연구, 국제환경교육연구소.
20. 환경부 (2006). 환경교육 발전 계획(2006~2015).
21. 환경부(2009), 환경교육진흥법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

2008년 3월 20일 접 수
2010년 3월 29일 심사완료
2010년 3월 29일 게재확정